

# 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,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「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평가대상기관: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

※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

2. 평가자: 안전보건공단 직원(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)

3. 평가대상기간: 2023. 1. 1. ~ 2023.12.31.까지 수행한 업무

4. 평가방법: 기관별 방문평가(기관별 1일)

5. 평가지표: 운영체계(A), 업무 충실성(B), 업무성과(C), 가·감점(D)으로 구성

- **[붙임2]** 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참조

-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

| 등 급 | 기 준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S등급 |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        |
| A등급 |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|
| B등급 |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|
| C등급 |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|
| D등급 |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       |

-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

·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

·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「평가거부」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공표

6. 평가일정

- 평가실시: 2024년 3월 ~ 5월

※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센터 담당자 통해 별도 연락 예정

- 잠정평가결과(절대점수) 통보: 5월 중(예정)

-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: 5~6월 중(예정)

※ 평가근거,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**[붙임3]** 참조

※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

-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: 2024년 7월(예정)

## 7. 사전제출자료 업로드

- **[덧붙임1]** 사전제출자료(①기술자료 배포 실적집계표, ②자체평가보고서, ③평가대상 DB)를 작성한 기관은 **K2B에 제출** (제출 방법은 **[덧붙임2]** 참조)
- **2월 29일(금) 18:00까지 기한 내 제출** (※ 미 제출 시, 최저점 부여 및 가점 미부여)

※ 기관의 “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업무관리자”만 사전제출자료 업로드 가능하며, 업무관리자가 없거나(신규기관에 해당) 변경된 경우 아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신규기관)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**K2B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\*** 제출
- ② 변경기관) 평가 업무관리자 변경 시에는 ①K2B 가입신청서\*, ②재직증명서, ③기관 자체 양식의 공문에 변경 전, 후의 업무관리자를 작성하여 제출

\* K2B 가입신청서 양식 및 제출방법은 실시 공고문의 **[덧붙임3]** 참조

## 8.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평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
☎ 052-703-3303/3315 또는 052-703-0103/0108

### [붙임, 덧붙임] 관련자료 확인경로

- 공단 홈페이지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→ 알림소식 → 공지사항 → 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
- 공단 홈페이지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→ 사업소개 → 공공/민간기관 평가 → 보건관리전문기관 → 자료실 → 평가 실시 알림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

2024년 2월 16일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